본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6 - 425호

의 안 명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

의 결 일 2026. 10. 19.

주 문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1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별 지]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제고 방안

2026. 10.

국민권익위원회

본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일반 현황 2

Ⅲ. 현황 및 문제점 4

1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미흡 4

2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처리 불편 5

3 외국인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미흡 6

Ⅳ. 개선방안 8

1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도입 8

2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편의 제고 8

3 외국인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강화 9

Ⅴ. 조치사항 11

본

I. 추진배경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 생활폐기물 배출은 모든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기본 공공서비스**로, **이용 방법의 편의성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가 필수적임

- 정부는 종량제 지침* 등을 통해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청·결제,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교환, 적정 배출 방식 홍보 등 **주민 편의 중심의 운영 방식 제시**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기준)

○ 전반적으로 관련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신고·납부 등 **이용 절차가 복잡**하거나 **지방정부별로 규정이 달라** 배출 과정에서 주민 불편과 불만 지속 발생

- 상당수의 지역에서 온라인 신고 방식을 도입했음에도 일부 지역의 경우 여전히 대형폐기물 배출을 위해 **스티커 판매소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

- 타 지역 전입 시 **기존 종량제봉투 사용이 어렵거나, 다문화·외국인 주민**이 **정확한 배출방법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민원사례]

✓최근 블라인드를 교체하면서 폐기하려고 보니 배출방법이 막막해 건의함. 주말에만 방문하는 사람은 면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결제나 배출 신고 앱을 만들어주셨으면 함(국민신문고, '26.4월)

✓외국인 불법투기입니다. 공무원들 순찰 요청드리며 부근에 원룸이 많으니 방문해서 배출방법, 배출장소 공유해 주시고 계도 전단지라도 돌려 주세요. (국민신문고, '26.8월)

○ 이에 지역 간 불균형과 제도의 한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의 편의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Ⅱ. 일반 현황

□ 생활폐기물 배출제도 개요

○ **(개념)** 가정 등에서 일상생활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사업장 폐기물* 제외)을 배출자가 종류별로 분리하여 지정된 방법·장소·시간에 내놓도록 하는 제도 (「폐기물관리법」 제2조)

* 공장·사업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 **(배출 체계)**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종량제를 기본으로 하되, 재활용가능자원·음식물류폐기물·대형폐기물은 각각 별도 방식을 적용

- 종량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정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 분리배출: 재활용가능자원(종이·플라스틱·유리·캔·고철 등)은 무상배출, 음식물류폐기물은 별도 종량제 적용
- 대형폐기물 : 사전 신고 후 수수료 납부 방식으로 배출

< 대형폐기물 주요 배출 절차 >



○ **(운영방향)**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의 세부 분야로 대형폐기물 관리,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 배출 등을 구분하여 운영기준을 제시

본

< 분야별 기본 운영방향 >

분야	기본 운영방향
대형폐기물	• 주민편의 및 수거효율을 고려하여 스티커 구입, 수거대행, 인터넷 신청 등 배출방식을 운영
전입자 종량제봉투	• 이사 후 전입자가 종전 지방정부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환 또는 스티커 등 인증방식을 제시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 적정배출을 위해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제시

□ 국내 인구이동 현황

○ **(전입)** 취업·학업·주거이전 등으로 지역 간 전입이 지속적으로 발생

- 최근 3년간 전체 전입신고 중 **시·군·구 경계를 넘는 이동이 약 70%**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

< 최근 3년 지역 간 전입 현황[1] >

(단위: 건)

구분	총 신고건수	시·도 내		시·도 간**
		시·군·구 내	시·군·구 간*	
2023년	4,364,486	1,333,855	**1,300,033**	**1,730,598**
2024년	4,487,846	1,387,135	**1,331,590**	**1,769,121**
2025년	4,471,799	1,330,816	**1,331,908**	**1,809,075**

* 같은 시·도 내 다른 시·군·구로 이동, ** 다른 시·도로 이동

※ 시·군·구 간 및 시·도 간은 종량제봉투 사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전입에 해당

□ 외국인주민 현황

○ **(외국인주민)** 국내 외국인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258만여 명으로 총인구의 5%를 차지**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한국 국적 미취득자, 한국 국적 취득자, 결혼이민자·국적 취득자의 자녀

1)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본

- **유학생·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 등이 늘면서** 지역사회에 거주·생활하는 외국인주민 규모도 증가

< 최근 3년 외국인주민 현황[2] >

(단위: 명,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외국인주민 수	2,258,248	2,459,542	2,583,626
총인구 대비 비율	4.4	4.8	5

Ⅲ. 현황 및 문제점

1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미흡

현 황

○ **(운영방식)** 각 지방정부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홈페이지·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 또는 스티커 판매소 방문·전화 등의 방식으로 운영

< 실태조사 현황('26.7월)[3] >

구분	지방정부 수	비율
온라인 운영	201개	87.8%
미운영	28개	12.2%

※ 온라인 방식 **미운영 28개** 중 **군 지역이 22개(78.6%)**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시행지침[4])**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인터넷 신고**와 동시에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시

2)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3)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를 담당하는 229개 지방정부(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및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
4)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문제점

○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주민이 **스티커 판매소를 방문**하거나, **수거업체에 전화**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에 의존**하게 됨

- 같은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더라도 **거주지역에 따라 신고·납부 방법과 편의성에 차이가 발생**

- **판매소 영업시간 제한·휴무, 스티커 품절, 전화 연결 지연** 등으로 스티커 구매 및 폐기물 배출에 불편 발생 가능

> **[민원사례]** 다른 지역은 대형폐기물 신청을 인터넷으로 결제하여 이용 가능한데, 우리 시는 이런 제도가 없는 것 같음. 21세기에 직접 방문하는 스티커 구매가 말이 안 됨. 구시대적인 행정처리 말고 적극적인 행정 도입이 시급함. (국민신문고, '26.7월)

2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처리 불편

현 황

○ **(운영방식)** 전입자의 종전 지역 종량제봉투는 직접 사용, 인증스티커* 부착 후 사용, 전입지역 봉투로 교환 또는 사용 불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전입자가 다른 지역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현재 거주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표시

< 실태조사 현황('26.7월) >

구분	지방정부 수	비율
사용·교환 가능	211개	92.1%
사용·교환 불가	18개	7.9%

※ 종량제봉투의 가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별로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해당 지방정부의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수입과 연계됨

본

○ **(시행지침)** 전입자가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신고 시 전입지역 봉투로 교환**하거나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배부**하는 방안을 제시

문제점

○ 종전 지역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남은 봉투를 버리거나 환불해야 하는 부담** 발생

- 환불이 방문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 **전출 후 종전 지역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전입지역에 따라 종전 지역 종량제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거나, 인증·교환을 거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차이 발생

※ 특별시·광역시 내의 구·군 간 전입은 별도 인증 없이 종전 지역 종량제봉투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국민권익위, '16.7월)

[민원사례] 강원도에서 전입 왔는데 쓰던 쓰레기봉투가 많이 남아서 동사무소, 구청에 물어보니 종량제봉투 인증 스티커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원 지역에 가서 환불받으라고 함.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되는데 개선이 필요함 (국민신문고, '26.4월)

3 외국인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미흡

현 황

○ **(운영방식)** 일부 지방정부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안내문, QR코드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배출안내를 제공

-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지역 외국인 구성에 맞춰 다국어 안내**를 제공

본

< 실태조사 현황('26.7월) >

구분	지방정부 수	비율
다국어 안내 제공	134개	58.5%
다국어 안내 미제공	95개	41.5%

○ **(시행지침)** 주민이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지역신문·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배출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교육**하도록 하고 있음

문제점

○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은 지역마다 **종량제봉투 구입처, 배출요일·장소,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 재활용품 분리 배출방법, 대형폐기물 신고방법** 등에 차이가 있음

- 외국인주민은 **언어 문제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 배출방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사후 단속·계도에 의존할 경우 **잘못된 배출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민원사례]

✓쓰레기 배출일이 아닌데도 쓰레기를 버리거나 대형폐기물을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음.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니 배출일,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안내해 주기 바람(국민신문고, '26.2월)

✓외국인이 관리하는 업장인데 쓰레기 처리가 엉망임. 심지어 재활용으로 내놓은 종이는 묶어서 내놓지 않아 온 사방에 흩날리고 있음. 업장에 쓰레기 배출방법을 정확히 설명하고 계도 필요(국민신문고, '26.8월)

본

Ⅳ. 개선방안

1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도입

○ 주민이 스티커 판매소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신고 시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운영

※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방문·전화 등 기존 오프라인 신고방법 병행 유지**

<폐기물 관리 조례 등 반영 예시>

개 선(예시)
▸ 제○조(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인터넷·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신고·납부·변경·취소·환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편의 제고

○ 전입자가 남은 종량제봉투를 버리거나 환불을 위해 종전 지역을 다시 방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등 정비**

- 지역 여건에 따라 ① 별도 인증절차 없이 직접 사용 ② 인증스티커 등 인증마크 부착 후 사용 ③ 전입지역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방식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하고, 사용기간·인정수량·처리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본

< 조례 등 개정 "예시" >

‣ **직접사용 방식**

전입자가 종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미사용 종량제봉투를 일정 기간 또는 수량의 범위에서 별도의 인증스티커 부착이나 교환절차 없이 직접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거·처리

※ 운영사례(**서울 금천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은 전입 전에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별도의 인증·교환 절차 없이 **소진 시까지 직접 사용 가능**(「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제6항)

‣ **인증사용 방식**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이 종전 지역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에 전입자 확인용 인증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

※ 운영사례(**경기 광주시**): 전입자가 종전 지역 종량제봉투에 읍·면·동에서 교부받은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 가능**(「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5)

‣ **교환 방식**

타 시·군·구 전입자는 전입신고 후 종전 지역 종량제봉투를 교환 가능

※ 운영사례(**충북 보은군**):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주민이 이전 지역에서 사용하고 남은 종량제봉투를 **보은군 종량제봉투로 교환**(「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

3 외국인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강화

○ 외국인주민이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국어 기본안내 항목*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안내문** 등을 통해 **제공**

* 종량제봉투 구입·사용방법, 생활폐기물 배출요일·장소,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재활용품 분리 배출방법, 대형폐기물 신고·배출방법, 문의처 등

- 영어 등 활용도가 높은 언어와 **지역 내 외국인주민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안내**하고, 그림문자·QR코드를 활용하여 상세안내 페이지와 연계 안내

< 다국어 배출안내 운영 "예시" >

▸ 다국어 안내문·QR 제공 사례

기본안내 항목을 **다국어로 제공하고 QR코드로 상세안내와 연계**

※ 운영사례(**인천 부평구**): 생활쓰레기 배출안내문을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로 제작하고,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한 QR코드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 지역특성 반영·생활밀착형 안내 사례

※ 운영사례(**대전 대덕구**): 지역 외국인 구성 등을 고려하여 **영어·베트남어·중국어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동별 찾아가는 홍보 병행**

※ 운영사례(**경북 경주시**): 종량제봉투에 **영어·중국어를 병기**하고 배출 관련 내용을 **그림문자로 표시**하여 외국인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본

Ⅴ. 조치사항

□ 조치사항 및 소관기관(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1.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도입	○ 조례 등에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대형폐기물 신고·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28개 기초지방정부 (붙임 참조)	2027. 6월
2.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편의 제고	○ 전입자 잔여 종량제봉투의 **직접 사용·인증사용·교환 중 하나 이상을 허용**하도록 관련 조례 등 정비	18개 기초지방정부 (붙임 참조)	2027. 6월
3. 외국인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강화	○ 지역별 외국인주민 구성에 맞는 **다국어 배출안내를 홈페이지·안내문·QR**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95개 기초지방정부 (붙임 참조)	2027. 6월

본

붙임 **과제별 조치대상 기관**

1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도입

구분	개	조치대상 기관
계	28	
부산	3	동구, 동래구, 사하구
대구	1	군위군
인천	1	옹진군
강원	2	횡성군, 고성군
충북	2	제천시, 단양군
충남	1	태안군
전북	3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광주	7	곡성군, 구례군, 강진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8	문경시, 경산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예천군, 울릉군

2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편의 제고

구분	개	조치대상 기관
계	18	
서울	9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울산	2	남구, 울주군
경기	1	연천군
강원	3	삼척시, 평창군, 고성군
전북	1	무주군
경북	1	의성군
경남	1	하동군

3 외국인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강화

구분	개	조치대상 기관
계	95	
서울	12	종로구, 광진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5	영도구, 동래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대구	3	동구, 북구, 군위군
전남광주	14	서구, 남구,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화순군, 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장성군, 진도군
대전	2	중구, 서구
경기	8	의정부시, 과천시, 남양주시, 군포시, 의왕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인천	7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강원	11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화천군, 인제군, 양구군, 고성군, 철원군
충북	4	청주시,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충남	6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전북	4	전주시, 김제시, 진안군, 순창군
경북	9	안동시, 영천시,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	9	통영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세종	1	세종시

본

참고 | 관련 법령·지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의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의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 ④ (생략)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 ⑩ (생략)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본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22.1.10.)

Ⅱ. 기본원칙

ㅇ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징수

Ⅲ. 세부 시행지침

1.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

ㅇ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은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의 종류별로 선정하여 배출자에게 부과

바. 종량제봉투의 환불·교환 편리성 제고

ㅇ 봉투가격이 동일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관내 모든 봉투판매소에서 봉투 교환이 가능토록 개선

ㅇ 봉투가격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간에는 상호 협의하여 봉투 판매소에서 교환해 주고 자치단체 간 연 1, 2회 교환량과 판매가격 차액을 정산하는 체계를 구축

※ 시·군·구 간 봉투가격 차액을 노린 다량의 환불·교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환매수 제한

ㅇ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자체 종량제봉투로의 교환 또는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필요량에 따라 배부하고 인증마크 부착 시 수거·처리 조치

4. 대형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방법

ㅇ 대형폐기물 배출과 수거는 주민편의 및 수거효율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추진

① 자치단체에서 배출스티커 구입·배출

-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해 배출인의 주소, 성명, 배출일자, 배출폐기물명, 수량, 크기 등을 신고하고 배출스티커를 구입
- 수거전담반 직원이 배출원을 방문하여 배출스티커가 부착된 폐기물 수거

②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 구입·배출

- 자치단체에서 배출스티커를 제작[폐기물부착용, 배출자 보관용(수수료 납부필증) 2매]하여 봉투판매소에 판매
- 배출자는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스티커를 구입한 후 배출자명, 배출일시를 배출스티커에 기재 후

본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③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업체 지정 수거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전담하는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배출자가 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해 신고 후 배출
- 대행업체에서 배출원을 방문하여 처리수수료를 징수한 후 현장에서 수거(배출자에게 영수증 발급)

④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 신청 후 배출하는 방안 강구

- 처리수수료 납부방법은 인터넷 신고와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은 출력 후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

※ 위조 영수증의 불법 제작·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위조방지 프로그램 도입 등 대책 마련 필요

ㅇ 배출스티커 구입 장소 확대 및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분류하여 유사한 품목 간 수수료 차이를 줄이는 방안 강구

14.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단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다.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ㅇ 반상회보에 고정란을 확보하여 수범사례를 중심으로 지속적 홍보 실시

ㅇ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실시

ㅇ 지역단위 각종 행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순회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주변에 전파되도록 유도

ㅇ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주변 청소하기, 재활용가능 자원 분리배출 및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교육실시

본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10월 19일

위 원 장 정 일 연

위 원 한 삼 석

위 원 조 소 영

위 원 이 명 순

위 원 권 석 원

위 원 최 명 규

위 원 이 흥 주

위 원 김 바 올

위 원 신 상 욱

위 원 허 재 우

위 원 김 남 주

위 원 고 춘 순

위 원 민 병 로

위 원 김 매 경

위 원 장 유 식

본

정본입니다.

2026. 10. 19.

국 민 권 익 위 원 회